

정약제도안내

□ APT 정약안내 : 특별공급

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국가유공자, 노부모부양,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(임대)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특별공급 소득기준	특별공급이란	기관추천	신혼부부
다자녀가구	노부모부양	생애최초 주택구입	청년
신생아	이전기관종사자 등	외국인	

신혼부부(민영주택)	신혼부부(국민주택)	신혼부부(공공주택-일반형, 선택형)	신혼부부(공공주택-나눔형)
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신혼부부(민영주택)

대상주택	전용면적 85m ² 이하의 분양주택
공급 물량	건설량의 23% 내
대상자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
청약자격	<p>1. 무주택세대구성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[청약신청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)]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. * 분양권등 :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<p>-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(배우자 분리세대)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·비속을 포함합니다.</p> <p>*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</p> <p>2.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기준 :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 - 자산기준 :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의 합계액이

	<p>시행령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</p>
청약통장	<p>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- 청약예금 :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- 청약부금 :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
선정방법	<p>① 소득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단계) 신생아 우선공급 (25%)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)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,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인 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③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- (2단계) 신생아 일반공급 (10%)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)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,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 초과 140% 이하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초과 160% 이하)인 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③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- (3단계) 우선공급 (25%) :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인 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단계 낙첨자 중 1단계 신청자를 포함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② → ③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- (4단계) 일반공급 (10%) :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 초과 140% 이하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초과 160% 이하)인 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단계 낙첨자 중 2단계 신청자 및 3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② → ③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- (5단계) 추첨공급 :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%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이 3억 3,100만원 이하인 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4단계 낙첨자를 포함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<p>② 순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순위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, 전혼자녀 제외 * 「민법」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- (2순위) 자녀가 없는 분 <p>③ 신생아 우선공급, 신생아 일반공급 및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(2)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(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) (3)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